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5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복기왕 · 최혁진 · 이상식
어기구 · 정준호 · 김승원
조계원 · 김남희 · 이강일
박용갑 · 문진석 · 정진욱
한준호 · 김우영 · 정태호
한병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을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 및 성능 기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을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의 기준·절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자도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

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6. (생략) <신설> 5. ~ 14. (생략)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	제2조(정의) ----- -----. 1. ~ 4의6. (현행과 같음)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 14.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 제2조제4호의7에 따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 및 성능기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 ----- ----- ----- ----- ----- -----

영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 ----- ----- -----
② (생 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u>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u>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 받은자도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u> ⑤ ----- ----- <u>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u>의 기준·절차----- -----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튜닝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